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
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재무과)

의안번호	제237호
제 출 자	정병기 의원 외 17명(2023. 11. 1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,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함(안 제3조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재무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4. 검토의견

- 세입·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 할 수 있도록 하여, 예·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2017년 12월 28일(시행 2018. 1. 1.) 의원 발의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제정되었음.
- 조례 제3조제3항¹⁾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‘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’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, ‘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’에 회기 일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례와 불일치 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에 ‘다만,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’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고의 공백을 없애고,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

1)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
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